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운영희 의원·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예방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4)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(안 제5조 ~ 제6조)
- 5) 재정 지원(안 제7조)
- 6)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-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인, 실종 등의 조례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나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) 예방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근거함

1. 실종 예방 대책

2.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

3.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
4.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라)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(안 제5조 ~ 제6조)

- 지원대상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

2. 단기거주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
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

- 지원사업

1.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

2.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
3.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

4.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

마) 재정 지원(안 제7조)

바)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~ 제9조)

□ 금천구 발달장애인 현황

장애유형	합계			심한 장애			심하지 않은 장애		
	합계	남성	여성	소계	남성	여성	소계	남성	여성
지적	832	511	321	832	511	321	0	0	0
자폐성	183	158	25	183	158	25	0	0	0
합계	1,015	669	346	1,015	669	346	0	0	0

3) 검토 의견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” 고 장애인의 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
- 본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예방 계획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